

# <붙임 1> 적재물배상책임보험관련 법규조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일부개정 2004. 1. 20.]

##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제8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략

##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제24조 (준용규정)

.....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1.20>

### 제24조의6 (준용규정)

.....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상 법[법률제6545호 일부개정 2001. 12. 29.]

## 第8章 運送周旋業

第115條 (損害賠償責任) 運送周旋人은 自己나 그 使用人이 運送物의 受領, 引渡, 保管, 運送人이나 다른 運送周旋人의 選擇 其他 運送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毀損 또는 延着으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第9章 運送業 / 第1節 物件運送

第135條 (損害賠償責任) 運送人은 自己 또는 運送周旋人이나 使用人 其他 運送을 爲하여 使用한 者가 運送物의 受領, 引渡, 保管과 運送에 關하여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運送物의 滅失, 毀損 또는 延着으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붙임 2> 미국 및 일본의 사례

---

### 1. 미국

#### 가. 운송업자의 구분 및 책임법리

- 일반운송업자(Common Carrier) : 일반공중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이며, 운송 중인 제품의 안전운반책임과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
- 계약운송업자(Contract Carrier)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 하주를 위해 운송하는 업자이며, 운송업자에 의해 인정된 계약에 따라 책임의 세부사항이 규정됨

#### 나. 의무보험제도

- 州間(interstate) 또는 국가간(foreign)을 이동하는 화물운수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
  - 의무보험가입한도액 :
    - 1 사고당 US\$ 10,000
    - 1 차량화물당 US\$ 5,000
- 운수사업자 자체 위험관리차원에서 동금액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정상태가 양호한 화물운송인의 경우 자가보험 인정
- 연방가입요구를 제외하고, 많은 주는 州내의 운송업자에게 연방규정과 유사한 가입의무를 요구

## 2. 일본

### 가. 운송업자수탁화물배상책임보험(민영손보사)

- 운송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도난등의 사고로 운송업자가 화주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운송보험으로
  - 운송화물의 고액화와 더불어, 운송업자에게는 자동차보험-자배책보험과 함께 불가결한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계약방식은 차량특정방식(차량기준)과 운임방식(운임수입액)이 있음
  - 차량특정방식 인수가 원칙이나 피보험자인 운송업자가 특수한 운송업자\*인 경우 운임방식으로도 인수가 가능
  - \* 증차, 감차 등이 빈번한 대규모 운송업자, 불특정하게 용차를 자주 사용하는 운송업자, 특정 면허를 가진 운송업자 등이 이에 포함

### 나. 일화협연합화물보상제도(日貨協連貨物補償制度)

- 상품운영개요
  - 일본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와 민영보험사(共榮火災)와 연결한 운송업자수탁화물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운영
  - 가입대상
    - 일본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트럭운송사업자
    - 지방교통공제조합가맹 트럭운송사업자
- 보상한도액
  - 소형차 : 1,000만엔(1차량 1사고)
  - 대형차 : 1,500만엔(1차량 1사고)
  - 보관차 : 5,000만엔(1보관장소 1사고)
  - ※ 적재중량기준 : 소형차(5톤 미만), 대형차(5톤 이상)

## CEO Report 2004-14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과 운영전략

---

발행일	2004년 12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이 득 주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손해보험본부  
특종보험팀(☎368-419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